

2025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 공고

전북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특색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예산규모) 전북지역 예산 110백만원, 3개사 내외
- (사업기간) 협약일 ~ '25. 11. 30까지
- (지원금액) 기업당 국비 5천만원 한도
- (세부사업) 지역자율형 바우처*
 -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지역자율형 바우처
 - 전북특별자치도내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중소기업부 공고(제2025-64호)에서 진행중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전용)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5. 2. 13. ~ '25. 3. 6.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3월 6일(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수도권 外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 신청서 제출(3.6,목)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 [별첨6]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순위작성 (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수강,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락 되며, 사업 완료 이후,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
 -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 他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규모) 예산 110백만원(3개사 내외)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③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으로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
 - * [별첨5] 참조

뿌리산업 범위(14개 기술)

- ◆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6대 기반공정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8대 차세대 공정 기술
 -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필름지류, 로봇, 센서, SW, 엔지니어링 설계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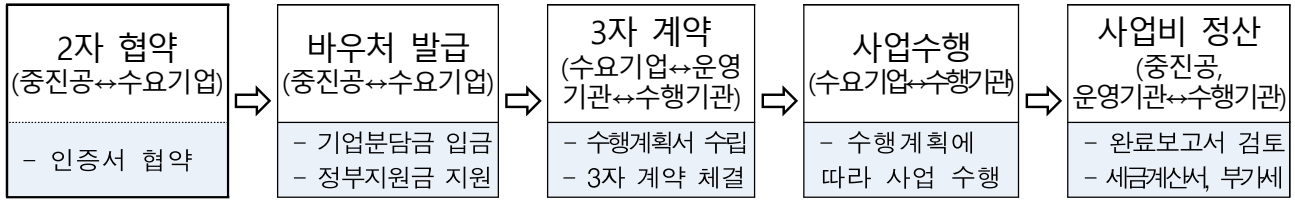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아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¹⁾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별첨5] 업종코드 참조
⑧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⑨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⑩	해당 시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②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 중소기업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서식4) (⑥,⑦,⑧,⑨,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⑪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 표창 수여 기업 (* 2020.1.1.~사업 실효시까지) ② 전북특자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역 자율 우대가점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2) ①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②협업승인 기업,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⑥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⑦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⑧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⑨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⑩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⑦) 공고문 [별첨5]를 참고하여 유효기간 내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제출
- (⑨)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⑩)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 우대가점 연번⑩(①~⑤)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⑪-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사본 업로드
 - * '2020.1.1.일부터 사업 실효시까지
- (⑪-②) 소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입주확인서 발급 후 확인서 업로드
 - * [별첨6] 참고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063-210-9943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063-460-983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별첨7]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별첨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요 내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표자	학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체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출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주식 보유順으로 기재]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장상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희망 수행기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메뉴판]-[서비스검색]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6-1.수행 과제”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 미등록 기관은 미등록으로 체크

예시)	컨설팅	1순위	OO컨설팅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2순위	OX연구원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	-----	-------	---------------	--	-----	-------	---------------	--

컨설팅	1순위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2순위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기술 지원	1순위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2순위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마케팅	1순위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2순위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기업은 마케팅 부분 작성불필요

6-3.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4.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5.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120억원 초과(4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시 신청분야 내 '마케팅' 공란

8. 추진일정[빛금색칠 혹은 Bar 표시]

신청분야	'25년								
	1	2	3	4	5	6	7	8	9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중대재해는 마케팅 작성불필요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 내용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 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 마케팅			
	예) 디자인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input type="checkbox"/> B to B	<input type="checkbox"/> B to C	<input type="checkbox"/>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서식3】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기관명	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센터장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담당자명		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주 소 (도로명 상세주소)	(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요청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 확인		

가점 검토의견	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5.00.00. ~ 2025.00.00.
<p>2025년 0월 0일</p> <p>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장 OOO (서명 또는 인)</p>	
<p>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p>	

< 참고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 위기지원센터 확인서(서식4) 발급 관련 문의처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033-248-5668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055-259-3324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053-819-3032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062-602-723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053-757-3708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042-930-4848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051-320-3532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052-219-8728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061-729-2500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063-219-2114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041-589-0163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043-270-2236

*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는 위기지원센터 미설치지역으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별첨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3

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담배 제조업	C12	
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18.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9. 음료 제조업	C11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4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1년 ~ '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1년.1.1 이전 설립 기업	- '21년, '22년, '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 '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년 매출액
'23.1월~'23.11월 설립	- '23년 매출액을 '23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3.12월 설립	- '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4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4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1.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22년, '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3.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3.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5

뿌리산업 업종 코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액압 프레스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키징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첨6

전북 농공단지 시·군별 현황

시군	농공단지명
군산시	동군산산업단지, 서군산산업단지, 성산산업단지, 임피산업단지
김제시	대동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 백구농공단지, 봉황농공단지, 서흥농공단지, 월촌농공단지, 황산농공단지
남원시	광치1산업단지, 광치2산업단지, 노암2산업단지, 노암3산업단지, 노암산업단지, 어현산업단지, 인월산업단지
익산시	낭산농공단지, 삼기농공단지, 왕궁농공단지, 함열농공단지, 황등농공단지
정읍시	고부농공단지, 농소농공단지, 북면농공단지, 소성특화농공단지, 신용전문농공단지, 신태인농공단지, 철도산업단지, 태인농공단지
고창군	고수미래산업단지, 복분자특화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흥덕산업단지
무주군	무주제1농공단지,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부안군	부안농공단지, 부안제2농공단지, 부안제3농공단지, 줄포농공단지
순창군	가남농공단지, 쌍암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풍산농공단지, 풍산제2농공단지
완주군	완주농공단지, 이서특별농공단지
임실군	신평농공단지, 오수농공단지, 오수제2농공단지, 임실농공단지, 임실제2농공단지
장수군	장계농공단지, 장수농공단지, 천천농공단지,
진안군	연장산업단지, 진안제2산업단지, 홍삼한방산업단지,

별첨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52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광주전라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6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3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43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장천동)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